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서울주택도시공사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근거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,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SH공사)의 근거 법령인 본 조례에는 빠져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.

○ 특히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은

지방공사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된 사업을 위해

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바,

SH공사가 추진하는 빈집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

빈집 사업 관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

보다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